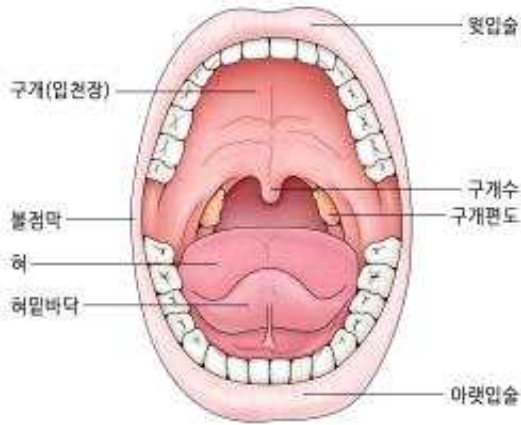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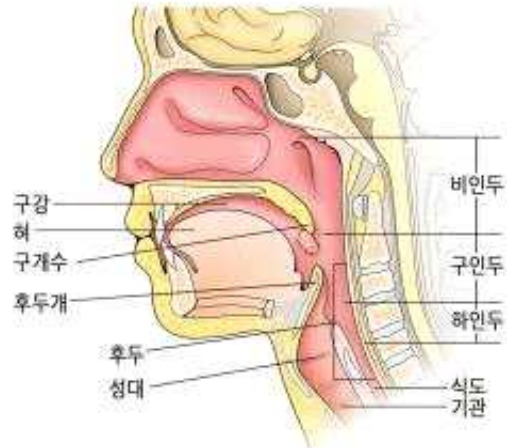


### 제3절 입의 장애



<입의 구조>



<구강의 옆쪽 단면>

#### 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2급 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코위영양관(nasogastric tube) 삽입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받는 상태인 자</li> <li>- 말하는 기능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언어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li> </ul> </li> </ul>
3급 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씹는 기능이 미음 또는 죽 상태의 음식물 이외에는 씹을 수 없어서(전치부의 개구량이 10mm 이하) 비경구 영양섭취 병행이 필요한 자</li> <li>- 삼키는 기능에 있어 액체물과 미음은 기도로 흡인되는 상태인 자</li> <li>- 말하는 기능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로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li> </ul> </li> </ul>
4급 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씹는 기능이 고형식을 충분히 씹지 못하여(전치부의 개구량이 30mm 이하) 고형식의 섭취가 상당히 제한된 자</li> <li>- 삼키는 기능에 있어 액체물이 기도로 흡인되는 상태인 자</li> <li>- 말하는 기능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언어기능에 제한된 장애가 있는 자</li> </ul> </li> </ul>

#### 2. 인정요령

가. 입의 장애는 언어장애와 음식물을 먹는 기능장애로 구분한다.

나. 언어장애

(1) 언어장애는 주로 하악, 혀, 입술, 구개, 치아 등 구강의 구음장애와 인두 또는 후두의 장애 및 발성기관의 장애에 의해 생기는 음성장애, 언어중추손상으로 인한 실어증 등을 말한다.

(2) 언어장애의 정도는 다음의 객관적인 검사결과 및 산출공식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가) 실어증 검사 K-WAB, 한국실어증감별진단검사

(나) 자음정확도: 한국어 발음검사, 우리말 조음-음운평가

$$\text{자음정확도(\%)} = \text{정확한 자음 수} / \text{총 자음 수} \times 100$$

(3) 구강구조 장애인 경우 구개 지지대나 치아보철물 등과 같은 보조기를 착용하고 시행한 검사결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구개구부가 없는 등 절제범위가 커서 보조기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후두전적출 상태인 자는 언어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로 인정하며 수술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5) 언어장애의 장애등급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언어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함은 “간단한 지시나 질문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거나 간단한 표현도 불가능한 자”로 다음 중에서 어느 한 경우를 말한다.

① 언어중추손상으로 실어증검사에서 실어증지수가 15 이하인 경우

② 후두부분적출 등 발성기관의 장애나 구강구조 장애로 자음정확도가 10% 미만인 경우

(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라 함은 “간단한 지시나 질문도 거의 알아듣지 못하거나 의미 있는 말은 거의 하지 못하는 자”로 다음 중에서 어느 한 경우를 말한다.

① 언어중추손상으로 실어증검사에서 실어증지수가 40 이하인 경우

② 후두부분적출 등 발성기관의 장애나 구강구조 장애로 자음정확도가 40% 미만인 경우

(다) “언어기능에 제한된 장애가 있는 자”라 함은 “매우 제한된 말만 이해하거나 매우 제한된 표현만이 가능한 자”로 다음 중에서 어느 한 경우를 말한다.

① 언어중추손상으로 실어증검사에서 실어증지수가 60 이하인 경우

② 후두부분적출 등 발성기관의 장애나 구강구조 장애로 자음정확도가 60% 미만인 경우

#### 다. 음식물을 먹는 기능장애

(1) 음식물을 먹는 기능의 장애는 음식물을 씹는 장애와 음식물을 삼키는 장애로 구분한다.

(2) 씹는 기능의 장애정도는 섭취 가능한 음식물의 내용, 섭취방법, 체중감소 정도, 상하악교합, 치아배열 및 개구운동(악관절, 하악의 개폐운동) 등을 단순방사선사진, CT 또는 MRI, 하악운동검사 등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3) 삼키는 기능(연하기능)의 장애정도는 연하조영검사 혹은 연하내시경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섭취 가능한 음식물의 내용 및 섭취방법, 체중감소 정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라. 기타 장애에 대한 인정기준

(1) 음식물을 먹는 기능장애와 언어기능장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 장애가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총합하여 인정한다.

(2) 치아 상실로 인한 음식물 씹는 기능의 장애는 인정하지 않으나 보철치료가 불가능한 치아의 상실로 인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애는 인정한다.